

##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홍삼 원료삼 경작지원 시스템

# Cultivation Support System of Ginseng as a Red Ginseng Raw Material during the Korean Empire and Japanese Colonial Period

조대휘\*

Dae-Hui Cho\*

### 초 록

#### 주제어

- 인삼 경작지원 시스템
-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
- 포삼규칙(包蔘規則)
- 시변제(時邊制)
- 배상금 선교제도 (賠償金 先交制度)

홍삼이 19세기에 청나라로 대량 수출되면서 개성에 대규모로 홍삼 원료삼 재배 단지가 조성되었다. 개성 상인 간 특유의 민간주도형 대부 제도인 시변제(時邊制)는 인삼 재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하였다. 대한제국 황실은 1895년에 포삼규칙(包蔘規則)을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홍삼 전매제의 효시이다. 1899년 일본인들에 의한 삼포 침탈이 심해지자 황실은 일본인들에 의한 인삼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경비를 하고, 원료삼 수납대금의 50~90% 정도를 수확 전에 미리 지급하는 국가 주도형 배상금 선교제도(賠償金 先交制度)를 운영하였다. 1895년 종자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상인들이 중국과 일본의 저질 종자를 수입하고 판매하게 되었다. 이에 1920년 공포한 홍삼전매령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외국 종자 수입을 금지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06년~1910년의 인삼경작은 폐농 수준이 되어 1910년 도 홍삼 원료 수삼 수납량은 불과 2,771근에 불과하였으나 1915~1919년과 1920~1934년까지 각 기간 중 연평균 수삼 수납량은 각각 약 11만 근, 15만 근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홍삼 원료 수삼 생산량 증가는 1908년부터 실시된 수삼 배상가격 사전 공시, 신규면적 재배 비용 용자, 우수경작인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삼업 육성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궁극적 목표는 한인 삼포주의 육성이 아니라 홍삼 사업의 이익금으로 식민지 경영유지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 재배기술 자문위원, 한국인삼공사 R&D본부 인삼자원연구소 소장(2013~2015), 수석연구원(2007~2019) 역임

Cultivation Technology Adviser, GimpoPaju Ginseng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Former Expert Researcher/Managing Director, Ginseng Resources Research Inst., R&D Headquarters, Korean Ginseng Corp.

Email: daehui98@naver.com

---

## ABSTRACT

---

### Keywords

- Ginseng cultivation support system
- Korean Empire
- Japanese colonial period
- *Sibyeonje* (private loan system)
- *Posamgyuchik* (regulation of the ginseng monopoly)
- *Baesanggeum Seongyojedo* (compensation advance payment system)

Because red ginseng was exported in large quantities to the Qing Dynasty in the 19th century, a large-scale ginseng cultivation complex was established in Kaesong. *Sibyeonje* (時邊制), a privately led loan system unique to merchants in Kaesong, made it possible for them to raise the enormous capital required for ginseng cultivation. The imperial family of the Korean Empire promulgated the *Posamgyuchik* (包蔘規則) in 1895, and this signaled the start of the red ginseng monopoly system. In 1899, when the invasion of ginseng farms by the Japanese became severe, the imperial soldiers were sent to guard the ginseng farms to prevent the theft of ginseng by the Japanese. Furthermore, the state-led compensation mission, *Baesanggeum Seongyojedo* (賠償金先交制度), provided 50%–90% of the payment for raw ginseng, which was paid in advance of harvest. In 1895, rising seed prices prompted some merchants to import and sell poor quality seeds from China and Japan. The red ginseng trade order was therefore promulgated in 1920 to prohibit the import of foreign seeds without the government's permission.

In 1906–1910, namely,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ginseng cultivation was halted, and the volume of fresh ginseng stocked as a raw material for red ginseng in 1910 was only 2,771 geun (斤). However, it increased significantly to 10,000 geun between 1915 and 1919 and to 150,000 geun between 1920 and 1934. These increases in the production of fresh ginseng as a raw material for red ginseng were the result of various policies implemented in 1908 with the aim of fostering the ginseng industry, such as prior disclosure of the compensation price for fresh ginseng, loans for cultivation expenditure in new areas, and the payment of incentives to excellent cultivators. Nevertheless, the ultimate goal of Japanese imperialism at the time was not to foster the growth of Korean ginseng farming, but to finance the maintenance of its colonial management using profits from the red ginseng business.

---

## I. 머리말

16세기 중반의 중국 명나라 때부터 17~18세기의 청나라 전성시대에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려 인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sup>1)</sup>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산삼은 국내의 조공예물 및 중국과 일본에 수출물량 증가로 무계획적으로 채취됨에 따라 18세기부터 서서히 멸절되었다.<sup>2)</sup> 따라서 당시 필연적으로 산삼은 인공재배의 가삼(家蔘)으로 대체되었고 이를 원료로 이미 개발된 증삼방법에 의해 제조된 판삼(홍삼)이 청나라에 수출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1797년 청나라 사행경비 마련을 위해 공포된 포삼제를 시작으로 19세기까지 홍삼은 조선 왕실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청나라의 홍삼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하고자 개성에 근대화된 대규모 홍삼 원료삼 경작포지가 조성되었다. 홍삼 원료삼인 6년근 생산에는 많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 경작인들은 개성에서 성공적으로 작동된 민간 자금 대부 시스템인 시변제(時邊制)<sup>4)</sup>를 통하여 이러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조선은 1895년 홍삼전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포삼규칙(包蔘規則)을 공포<sup>5)</sup>하였는데 이때부터 홍삼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되면서 점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세기 홍삼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1876년) 이후 일본 상인의 홍

삼 밀조(密造)가 극심해져 1906~1910년간 개성의 홍삼 원료삼 재배는 거의 폐농(廢農)수준까지 내려앉게 되었다<sup>6)</sup>. 그러나 우리나라 홍삼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도 독보적 위치를 견고히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인삼경작 지원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9세기 홍삼 사업의 태동과 발전, 경작 분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여러 경작지원 시스템을 논하고자 한다.

## II. 조선 후기 개성의 근대화된 인삼 재배와 홍삼 전매제도의 효시

1606년 조선 정부는 호조에서 인삼 상인(蔘商)에게 허가장인 로인(路引)을 지급하고 이 로인을 가진 자만 인삼 무역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1686년에는 금삼사목(禁蔘事目)을 정해 인삼의 밀무역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sup>7)</sup>. 이 시기의 인삼은 자연산인 산삼을 말린 백삼 형태로 가공되어 수출되었다. 17세기부터 산삼이 멸절되면서 가삼을 원료로 가공된 홍삼이 제조되었다.

[표 1]은 1797년 이후 홍삼 사업 관련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sup>8)</sup> 조선 후기 1797년(정조 21년)에 역관(譯官)이 청국으로 사행(使行)할 때 경비 마련 차원에서 홍삼 무역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포삼제(包蔘制)를 시행하였다. 포삼제는 사역원이 관리 주체가 되어 역관이 연간 120근(72kg)의 홍삼을 사행경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였다. 포삼제 운영은 1802년부터 홍삼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1895년 포삼규칙 공포에 따라 홍삼세 외에 홍삼 판매가의 40%를 세금으로 부과하였다[표 1].

국가가 주관하는 홍삼 사업으로 전매제의 효시(嚆矢)

<sup>1)</sup> 구도영, 「근세 동아시아 세계 약용식물 인삼의 가공과 유통 - 조선의 대명 진현 인삼을 중심으로」, 『의사학』 29(3) (대한의사학회, 2020) p. 959-998; 박현규, 「동의보감의 중국 전래시기와 동의보감 활용에 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44 (2014) p. 365-387; 박현규, 「일본에서의 조선 허준 동의보감 유통과 간행」, 『일본연구』 29 (2018) p. 149-182; 이철성, 「조선 후기 고려홍삼 무역량의 변동과 의미」, 『인삼문화』 1 (고려인삼학회, 2019) p. 67-77.

<sup>2)</sup> 『승정원일기 제289책』 15책(숙종 8년 4월 13일) p. 442.

<sup>3)</sup>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sup>4)</sup> 양정필,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p. 51-98.

<sup>5)</sup> 『대한제국 관보』 개국 504년 9월 6일 (내각기록국관보과, 1895).

<sup>6)</sup>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업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의사학』 18 (대한의사학회, 2009) p. 133-155.

<sup>7)</su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정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798>, (2022년 9월 3일 열람).

<sup>8)</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 123-177.

라고 할 수 있는 포삼규칙(包蔘規則)이 1895년 법률 제 14호로 공포되었다. 이 포삼규칙은 1894년의 구(舊) 포삼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홍삼세를 근당 12원에서 10원으로 낮추고, ‘홍삼 제조는 경험과 실력이 있는 자로 함’을 신규로 삽입하였다. 당시 수삼의 관리는 농상공부에서, 홍삼 전체의 관리는 탁지부에서 수행하였다. 1894년에 탁지부는 구 포삼규칙에 의해 포삼공사(包蔘公司)를 설치하여 홍삼 사업 관리를 맡게 하고 홍삼 제조 관련 규정은 포삼공사장정(包蔘公司章程)으로 연간 홍삼 제조량을 15,000근으로 한정하였다. 탁지부는 홍삼 제

조도 업자에게 맡기고 홍삼세만 징수하였는데 홍삼 판매 시 판매가의 40%를 징수하기도 하였다[표 1]. 1895년에 농상공부는 홍삼증조판매규례(紅蔘蒸造販賣規例)를 제정(농상공부령 7호)하여 연간 총 홍삼 제조량과 개인별 제조량 제한을 삭제하였다[표 1]. 그러나 1896년 포삼규칙 개정 때문에 홍삼세가 근당 10원(50냥)이 되어 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를 주도한 개성상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표 1].

조선 후기 1797~1802년도에 홍삼을 매년 120근으로 한정해 역관들의 중국 청나라 사행경비로 지급하고 세

표 1. 조선 시대 후기 홍삼 사업 관련 제도 및 전매제도의 효시<sup>a)</sup>

시대구분 (연도)	홍삼 관련 제도	주요 내용 및 관리기관	세부 사항
1797 (정조 21년)	포삼제 (包蔘制)	- 인삼 관리가 조선조정 통제 하에 들어간 시기 - 역관의 중국 사행경비 지원 - 관리기관 : 司譯院	□ 역관 1인당 2~3근의 인삼 휴대하여 사행하도록 한 제도 - 연간 허용된 홍삼 포삼은 120근 한정 - 포삼 1근의 가격은 은 100냥 □ 홍삼의 개인적 수출과 밀무역 금지
1802 (순조 2년)	홍삼세 (紅蔘稅)	- 홍삼에 세금부과	□ 포삼제 운영을 세금징수로 변경 - 홍삼세 근당 200냥 세금징수 - 세금 수입의 50%는 사행원에게, 나머지 50%는 통역담당 역관에게 지급 - 연간 허용된 홍삼 포삼은 120근 한정
1811 (순조 11년)	홍삼세 변경	- 밀조 홍삼(潛蔘) 금지방안	□ 연간 허용된 홍삼 포삼은 200근 한정 - 홍삼세 24,000냥 징수(근당 200냥 세금 <sup>b)</sup> )
1822~1894 (순조 22년~고종 31년)	사역원 폐지 (1894년) 紅蔘稅 변경	- 1884년 왕실이 홍삼 제조권 장악	□ 연도별 경시적인 홍삼 제조량[연도(근)] - 2백 근(1811년)→1천(1822)→8천(1834)→4만(1847)→15천(1864)→30천(1866)→202백(1875)→252백(1881)→202백(1884)→15천(1894) □ 1864년부터 홍삼세는 斤당 14냥 □ 1887년 왕실 무기 구매용 홍삼 15천근 수출 □ 1894년 갑오개혁으로 사역원 폐지
1895(9월) (고종 32년)	포삼규칙 (包蔘規則 <sup>c)</sup> (법률 14호)	- 紅蔘蒸造販賣規例 제정 - 관리기관 : 탁지부 (재배 분야는 농상공부에서 관리)	□ 1894년 탁지부 포삼공사 설치, 포삼공사장정 제정 - 홍삼 15,000근 한정 제조, - 인삼 재배, 수삼매입, 홍삼 제조는 공사의 허가증이 있어야 함 → 홍삼 전매제도의 효시임을 나타냄 □ 1895년 농상공부는 홍삼증조판매규례 제정(농상공부령 7호)⇒ 홍삼제조량 한정 삭제 □ 홍삼세 斤당 10원(50냥) 징수 사역원(1894년 폐지), 호조 수행업무를 탁지부에서 통합 관리 □ 홍삼 판매가의 40% 세금부과 - 인삼 재배가 위축되고, 인삼 종자값 상승으로 인삼경작 포기 농가 출현

<sup>a)</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77.

<sup>b)</sup> 이철성. 「조선 후기 고려홍삼 무역량의 변동과 의미」, 『인삼문화』 1(고려인삼학회, 2019) p.67-77.

<sup>c)</sup> 「대한제국 관보」 개국 504년 9월 6일 (내각기록국관보, 1895년).

표 2. 조선 후기 및 대한제국 연도별 홍삼 제조 법정 제한량 및 홍삼세

연도	홍삼 제조 법정 제한량 혹은 실제 생산량 (근)	근당 홍삼세(냥)	세금 징수액 (냥)	인용 문헌
1797	120	-	-	양 <sup>㉑</sup>
1802	120	200	24,000	양 <sup>㉑</sup> , 이 <sup>㉒</sup>
1811	200	200	40,000	양 <sup>㉑</sup> , 이 <sup>㉒</sup>
1822	1,000a)	상동(추정)	200,000	양 <sup>㉑</sup>
1832	8,000	12.5	100,000	이 <sup>㉒</sup>
1834	8,000	상동(추정)	100,000	양 <sup>㉑</sup>
1841	20,000	5	100,000	이 <sup>㉒</sup>
1847	40,000	5	200,000	이 <sup>㉒</sup>
1851	40,000	4	160,000	양 <sup>㉑</sup>
1857	25,000	6	150,000	이 <sup>㉒</sup>
1864	15,000	14	210,000	양 <sup>㉑</sup> , 이 <sup>㉒</sup>
1866	35,200	상동(추정)	492,800	양 <sup>㉑</sup>
1867	15,000	14	210,000	이 <sup>㉒</sup>
1875	20,200	상동(추정)	282,800	양 <sup>㉑</sup> , 이 <sup>㉒</sup>
1895	15,000	50 홍삼판매세 별도b)	750,000	양 <sup>㉑</sup>
1899	제조 정액제 없어짐	-	-	한국전매사 1권 <sup>㉓</sup>

㉑ 당시 홍삼의 밀삼(密蔘) 증가를 견제하기 위해 1822년도에 포삼 수출량을 1,000근으로 증가시킴.

㉒ 홍삼 제조 승인 민간업자 경우 홍삼 판매가의 40%를 세금으로 별도로 징수.

㉓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177.

㉔ 이철성, 『조선 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㉕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6장 조선조 말기의 세시책」, 『한국전매사』 제1권 (고려서적주식회사, 1980) p.325-334.

금은 없었으나 1802년부터 조선 정부는 역관에게 홍삼 근당 200냥의 홍삼세를 징수하였다. 1811년에는 홍삼의 연간 법정 제한량 200근에 근당 200냥의 홍삼세를 적용하여 홍삼세가 4만 냥이었다. 홍삼 제조량을 소량으로 제한하자 청나라에 유입되는 밀수제조가 늘어나는 병폐가 있어 1822년에 홍삼 제조량을 1,000근으로 늘려 홍삼세가 20만 냥이 되었다. 1832~1857년 기간 중 매년 홍삼 8천~4만 근을 제조하였는데 홍삼세는 근당 4~12.5냥으로 낮게 조정하였는데도 홍삼세는 총 10~20만 냥에 달하였다. 1864년부터 홍삼세는 근당 14냥으로 적용되어 1864~1875년도 홍삼세가 21~49만2천8백 냥<sup>9)</sup>이 징수되었다. 1864~1875년도 연평균 홍삼

세는 1802년도 최초 홍삼세 2만4천 냥에 비해 12배인 29만8천9백 냥으로 큰 액수가 징수되었다[표 2].

이후 사행경비로 제공된 홍삼은 점차 증가하여 1841년 2만 근(12톤)이 되었다. 그리고 1847, 1851년도에는 최고 4만 근(24톤)까지 청국에 수출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1874년까지 연도별로 1~3만 근(6~18톤)이 수출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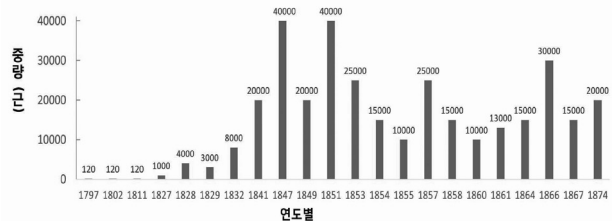


그림 1. 조선 후기 1797년부터 1874년까지의 연도별 홍삼 제조량<sup>10)</sup>

9) 당시 쌀 1섬(144kg) 가격은 5냥, 2022년 현재 쌀 1섬(144kg) 가격은 43.2만 원, 그러므로 당시 1냥은 현재 8.6만 원, 당시 홍삼세 21~49만 냥의 현재 시세는 180억~424억 원 수준임.

10) 이철성, 「조선 후기 고려홍삼 무역량의 변동과 의미」, 『인삼문화』 1 (고려인삼학회, 2019)p.67-77.

표 3. 1847년도 홍삼 4만 근 제조에 필요한 원료 수삼의 양과 경작 면적

홍삼 제조량(근)	원료 수삼 필요량(근)	칸당 단위생산량(근/칸)	필요 경작면적(칸)
40,000	160,000 <sup>a)</sup>	1~1.26 <sup>b)</sup>	126,316~160,000

<sup>a)</sup> 홍삼(수분함량 15%)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 수삼(수분함량 75%) 양은 제조된 홍삼 무게의 약 4배 필요.

<sup>b)</sup> 6년생 평균 칸당(3.24m<sup>2</sup>) 생산량은 1914~1915년대에 1.26근, 1847년대는 이보다 80% 수준인 1근으로 추정됨.

수삼으로부터 홍삼을 제조할 때 그 중량은 약 1/4로 줄어든다. 따라서 1847년도 제조된 홍삼 4만 근은 수삼 16만 근(약 96톤) 이상을 증삼하여야 만들 수 있다. 양<sup>11)</sup>에 의하면 1910~1915년대 6년생 수삼 생산량은 인삼밭 1칸(3.24m<sup>2</sup>)당 1.26근(0.76kg)이다. 1850년대는 이보다 생산량이 적어 1칸당 0.60~0.76kg 범위로 추정되므로 수삼 16만 근 생산을 위해서는 인삼 재배면적은 126,316~160,000칸(약 41~52만m<sup>2</sup>, 42~53ha)이 되어야 한다[표 3]. 2~6년생의 연생별 총 삼포 면적은 5배 면적인 631,580~800,000칸으로 19세기 중반부터 개성에는 그림 2와 같은 대규모의 근대화된 인삼 재배포지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인삼포지 해가림은 전통적인 전·후주 연결식 해가림에 벗짚 피복과 측림이 설치된 구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9세기 초반 개성상인들은 본인들의 장점을 발휘해 홍삼 원료삼 수급 방안과 판매 등에 매우 혁신적인 장사 수완을 발휘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인삼 재배에 필요한 비용을 경작인에게 담보 없이 상호 신뢰로 대출해 주는 시변제(時邊制)<sup>13)</sup>를 실시하였다.<sup>14)</sup> 이를 이용하여 개성의 경작인은 재배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여 6년생 인삼을 지속 생산할 수 있었다. 19세기 초반 개성상인은 홍삼 제품을 수출하면서 인삼 삼포에 대한 경영도 함께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개성상인의 홍삼 판매와 그 원료삼의 확보에 의한 부의 축적은 당시 조선 내 다른 상인 집단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이었다. 이로 인하여 19세기 후반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에도 개성상인이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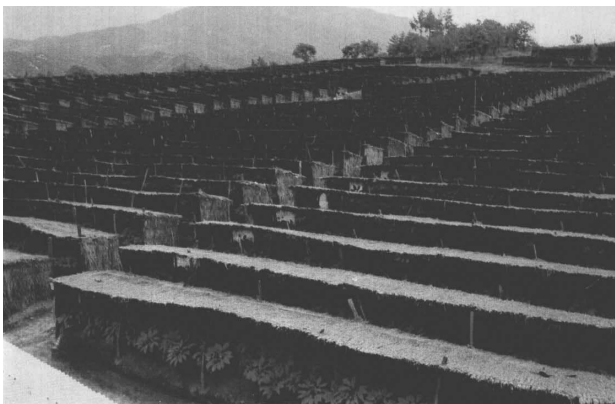


그림 2. 전형적인 벗짚피복 해가림시설 인삼포지<sup>12)</sup>  
- 전후주 연결식 해가림과 측림으로 조성된 포지

### III. 대한제국의 홍삼 전매제도와 개성의 인삼 경작지원 시스템

1897년 출범한 대한제국의 홍삼 전매제도와 관련 경

<sup>11)</sup> 양정필, 「1910-20년대 개성상인의 백삼 상품화와 판매 활동」, 『의사학』 20 (대한의사학회, 2011) p.83-118.

<sup>12)</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한국전매사 제2권』 (삼성인쇄(주), 1981) p.408.

<sup>13)</sup> 이자 분납 시 이율을 점차 줄여서 받는 방식인 낙변(落邊)이라는 특수한 금리를 이용하여 자금의 대여자와 차용자 사이에 환도중(換都中)이라고 불리는 중개인을 통해 담보물 없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단기자금을 거래하는 특수한 금융제도이다. 이는 개성상인 사이에 주로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에 적용되는 장변(場邊)이나 시변(市邊)과는 다른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시변(時邊))]

<sup>14)</sup> 양정필,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p.51-98.

<sup>15)</sup> 양정필,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p.51-98.

표 4. 대한제국의 1908년도 홍삼전매법 공포 무렵의 홍삼 사업 관련 제도

시대구분	홍삼 관련 제도	주요 내용, 관리기관	세부 사항
1899 (11월) 光武 3년 (고종 36년)	○홍삼 전매제 <sup>a)</sup>	- 관리기관: 내장원	
1899 (12월) 光武 3년 (고종 36년)	○삼정과 설치 <sup>a)</sup> - 삼정사 설립하여 삼정사장정 제정	① 궁내부 내장원 산하, 개성 소재 ② 홍삼 관련 삼정업무 규정(1899~1905) - 관리기관 : 내장원 삼정과	□ 내장원 산하에 삼정과 신설, 운영 - 삼정과는 고종의 직속 기관으로 삼포 경영, 농업 관리, 삼포 도굴(盜掘) 방지, 홍삼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였고 인삼세 징수와 매매이익을 확보하는 부서이었음, 삼정사를 설립 □ 삼정사 회사설립(사규 삼정사장정 제정) - 삼정과 내 홍삼 사업 관리회사 □ 내장원경으로 이용익을 임명
1899~1904	○배상금 선교제도 <sup>b,c)</sup>	내장원경 이용익이 도입	□ 삼포 경작자에게 지급대여 <sup>d)</sup> - 인삼 재배는 5~7년 소요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여 배상금의 50% 혹은 90%에 해당하는 지급을 대여 - 수확연도 4~5월 선지급, 수확 후 배상금에서 환수 - 日步(원금 100원에 대한 하루이자) 4錢의 저리로 융자
1908 (7월) 隆熙 2년 (순종 2년)	○홍삼 전매법 공포 <sup>e)</sup>	- 배상금 선교제도 계속 수행 - 관리기관 : 경리원(내장원 명칭이 1905년 경리원으로 변경됨)	□ 일제는 홍삼을 국가전매사업으로 확정하여 공포하게 됨 <sup>e)</sup> - 1899년도 대한제국 황실의 홍삼전매제를 이어 받은 것임 - 개성상인은 홍삼을 제조, 수출할 수 없게 됨 - 생산된 모든 수삼을 구매하는 계약포지인 특별경작구역을 공포 - 배상금 선교제는 이자율 7~8% 고리 융자 - 개성에 삼정과 부속 홍삼 제조소 운영

<sup>a)</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177.

<sup>b)</sup>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제1회 삼정보고』(1908)

<sup>c)</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1장 구한국시대의 홍삼전매』,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주), 1981) p.409-19.

<sup>d)</sup> 양정필, 「한말 개성상인의 삼업 경영과 그 성격」, 『사학연구』 94(한국사학회, 2009) p.123~176.

<sup>e)</sup> 양정필, 「1910-20년대 개성상인의 백삼 상품화와 판매 활동」, 『의사학』 20(대한의사학회, 2011) p.83-118.

작지원시스템은 [표 4]와 같다. 1899년에는 본격적인 전매제도가 시행되어 홍삼 사업은 내장원의 삼정과(參政課)[그림 3-가]에서 운영되었고 이후 삼정사(參政社)란 회사가 설립되어 홍삼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다.<sup>16)</sup> 이후 인삼경작 지원을 위한 국가주관의 배상금 선교제도(賠償金 先交制度)가 내장원경(內藏院卿) 이용익[그림 3-나]에 의해 시행되었다. 배상금 선교제도는 1899년~1904년 기간에 계약경작인에게 그 해 수확될 수삼의 수납대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저리 융자로 대여하는 제도이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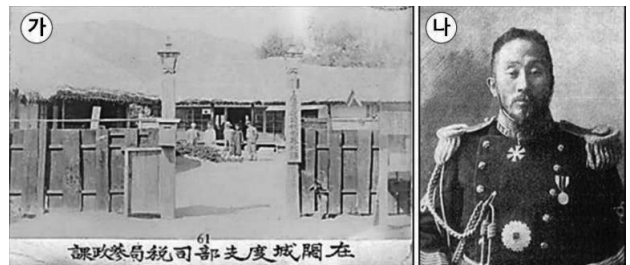


그림 3. 개성 소재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가)와 내장원경 이용익(나)  
(가) 대한제국 재무 총괄 관청 탁지부(1894~1910)의 개성 소재 사세국 삼정과<sup>18)</sup>  
(나) 대한제국 내장원경 이용익(1854~1907년), 재임(1899~1904년) 중 1899년에 홍삼포 계약경작인에게 배상금 선교제도로 수삼수납금 선지급을 처음으로 제공<sup>19)</sup>

<sup>16)</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177.

<sup>17)</sup>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제1회 삼정보고』(1908).

<sup>18)</sup>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한국삼정요람』(1908년).

<sup>19)</sup> 위키백과, 이용익. <https://ko.wikipedia.org/wiki/이용익> (2022년 9월 3일 열람).

1897년부터 1904년까지 홍삼은 약 2만 근(1898년)에서 최고 7만 4천 근(1904년) 내외의 물량이 수출되었다. 그러나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을 거치면서 홍삼 제조량은 1908년 5,134근, 1909년 2,941근, 1910년 895근으로 급속하게 감소하였다[그림 4]. 이러한 급격한 감소의 원인은 [표 5]와 같이 대한제국 당시 황실의 삼포 경영 미흡 및 외세 강권에 의한 인삼 생산성 발전대책 수립 부재와 홍삼 정책의 잦은 변경에 의한 삼포주의 수익성 약화, 일본인 양인과 신문사 특파원 기자 등의 삼포 침탈에 의한 경작인의 재배 의욕 상실 등 여러 복합요인 때문이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들의 삼포 침탈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졌다. 특히 1897~1898년에 삼포주에 가장 심한 피해를 줬는데 이들은 주로 수확기에 인천에서 임진강으로 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수삼을 시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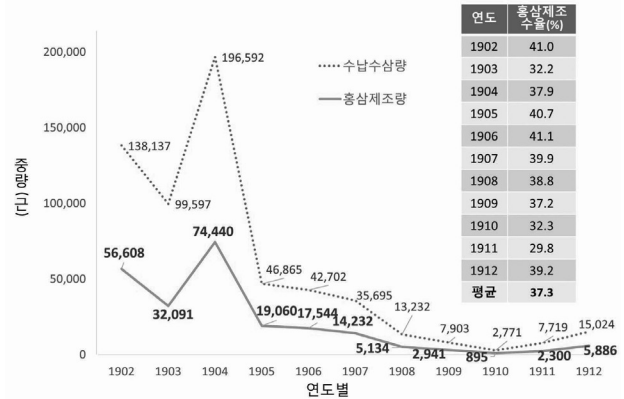


그림 4. 대한제국 시대(1897~1910년) 전후 연도별 홍삼 원료 수삼과 홍삼 제조량<sup>20)</sup>

[표 5].<sup>20)</sup> 이때 개성 경작인들은 당년도 채취된 인삼 종자를 <sup>21)</sup> 나르거나 개성의 남대문 앞에 버리고 인삼 재배 포기를 선언하였다.

표 5. 대한제국 기간(1897~1910년) 중 홍삼 사업 위기 상황과 관련 요인<sup>22)</sup>

연도	위기 상황	위기 관련 환경요인
1898 (광무 2년)	○ 삼포주의 수익성 약화 ⇒ 개성상인의 10년간 삼포 투자 종료로 인삼 산업 위기초래	① 광무 정권이 통감부로 정권이 교체됨 - 홍삼 정책의 잦은 변경 ② 광무 정권은 홍삼 관련 세수를 왕실 재정보호에만 치중 - 인삼 생산력 발전대책 수립 부재
1899 (광무 3년)	○ 3월에 개성 민요(民擾)발생	① 일본 상인의 삼포 침탈로 재배 의욕 저하 ② 수삼 배상금 인하 및 지급 지연(경리원) - 개성 인삼 농가는 인삼 재배를 더 이상하지 않음을 선서하고 당년도 생산 종자를 개성 남대문 아래 뿌리거나 불에 태움
1908~1910 (융희 2년~4년)	○ 홍삼 제조량은 1905년부터 급격히 감소 ⇒ 1908년은 침체기 ⇒ 1910년은 폐농 수준	① 1896~1907년 기간 중 홍삼제조량 양호 - 22,923근(1898년) → 56,608근(1902년) → 74,400근(1904년) → 14,232(1907년) ② 1908~1910년 기간 중 홍삼 제조량 저조 - 5,134근(1908년) → 2,941근(1909년) → 895근(1910년)으로 1896~1907년간 평균 제조량의 6.7% 수준으로 급감함

20~30%로 강탈하거나 수확할 포지를 강제로 헐값에 간매(間買) 하여 개성의 경작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인삼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 직면하자 개성상인들은 1898년을 마지막으로 삼포 투자를 종료하게 되었다. 개성의 인삼 경작인들은 개성상인의 투자종료 및 일본인의 불법 채굴과 간매 등 만행에 대해 정부가 조치하지 않자 그동안 인삼 행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결국 1899년에 개성 민요(民擾)를 일으켰다

<sup>20)</sup>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업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의사학』 18 (대한의사학회, 2009) p. 133-155.  
<sup>21)</sup>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업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의사학』 18 (대한의사학회, 2009) p. 133-155.  
<sup>22)</sup>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업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의사학』 18 (대한의사학회, 2009) (대한의사학회, 2009) p. 133-155.



표 6. 대한제국 시대(1897~1910년) 인삼경작 애로사항 해결과 홍삼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sup>a)</sup>

연도	제도	내용	세부 사항
1899 (광무 3년)	삼포 경비 (蔘圃警備)	일본 상인에 의한 蔘圃盜采 방지	당채(當採) 5년생 포지, 2~9월까지 군 경비병 근무 ○ 비용지원: 삼정과에서 경비병 식비 지원 <sup>b)</sup> 삼포주에게 실제 소유 증명서인 빙권(憑券) 교부 <sup>c)</sup> 로 간매 및 도난 방지에 활용
1899 ~ 1904 (광무 3년~8년)	배상금 선교제도 (賠償金 先交制度)	삼포 경작자에게 자금대여	- 지급액: 배상액의 50% 혹은 80~90% - 지급 시기: 수확연도 4~5월 선지급, - 환수(還收): 수확 후 배상액(수매대금)과 이자 결산하여 징수, 나머지 대금을 삼포주에게 지불, 부족시에는 추가납부 이자율: 日步(100圓에 대한 하루이자) 4錢
1906 (광무 10년)	종삼회사 (種蔘會社) 설립(設立)	품종개량, 종삼 품질양성	- 설립취지: 1906년 赤腐病 발생으로 생산이 저하되어 우량품종 개량 필요 - 비용지원: 경리원이 위원 업무비용 지원

<sup>a)</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19(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177.

<sup>b)</sup> 황성신문 1899년 8월 29일자

<sup>c)</sup>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제1회 삼정보고』(1908).

이러한 개성 경작인의 인삼 재배 포기 선언에 대응해 결국 내장원경 이용익이 군대를 동원하여 삼포 경비를 해서 경작인들에게 삼포 침탈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 주게 되었다. 그리고 재배 비용 저리 용자의 배상금 선교제도 운영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성 경작인들을 설득하여 재배를 지속하게 하였다[표 6]. 과거 개성의 시변제가 민간 차원의 지원시스템이었던 반면 배상금 선교제도는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였다. 이 제도는 광복 후 전매청의 계약금, 전도금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홍삼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경작비용 지원시스템은 개성상인으로부터 시작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현재까지 홍삼 수요와 재배 여건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점차 기반을 다져 갔다. 이 당시 대한제국 삼정과는 1899년에 삼포 도굴 방지를 포함하여 홍삼 원료삼 경작과 수매 및 가공 등의 관리를 주관하는 회사로 삼정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황실에서 관리하게 되었다[표 4].

1895년부터 국내 인삼 종자 가격이 오르자 장사꾼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저가의 종자를 1897년에 구입하여 홍삼포 경작인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경작인들은 외국산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된 묘삼을 본포로 이식한 결과 병충해가 만연하여 1904년 이후 생산량이 급

격하게 저하되었다. 국가권력 약화 때문에 상기와 같이 인삼경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06년경 개성의 인삼 농가는 폐농이 될 정도로 피해를 크게 입었다. 이에 인삼 관리기관이던 경리원에서 인삼 재배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종삼회사(種蔘會社)를 설립하여 품종개량에 힘쓰기도 하였다[표 6].<sup>23)</sup>

당시 외세의 침탈에 대응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점차 대한제국을 압박하여 1905년 을사늑약으로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대한제국 황실 관리부서 삼정사는 해산되었다. 이런 과도기에도 대한제국은 1897~1906년의 약 10년간 일제의 인삼침탈을 억제하기 위해 삼포 중간 매매금지, 삼포 도채 저지, 홍삼 판매사업 유지 및 홍삼 위탁판매권 제한을 위해 노력하였다[표 6]. 그러나 일제는 1907년 내장원의 홍삼 관리 체제를 탁지부에서 관리하도록 변경하여 인삼 사업을 탈취하고 1908년 홍삼전매법, 인삼세법, 홍삼전매법 시행세칙, 인삼세 시행세칙을 잇달아 반포, 홍삼 사업 전반을 장악하게 되었다[표 4].

<sup>23)</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19(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177.

표 7. 대한제국 시대(1897~1910년) 내장원의 일제 인삼침탈에 대한 대응 사항<sup>24)</sup>

추진사항	내장원의 방침	의의
삼포 중간 매매금지	- 수확 가능 삼포 중간 매매(間買) 금지	일본인의 삼포 탈취 방지
삼포 도채(盜採) 저지	- 외교적 및 군사적 수단으로 강경하게 맞섬 - 삼정 규칙 개정하여 빙표(憑表)에 의한 법적 장치 마련 -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 개정하여 도채(盜採) 처벌 근거 마련	
홍삼 판매사업 유지	- 전매제도 지속	홍삼 판매 주도권 내장원이 장악
홍삼 위탁판매권 제한	- 일본 三井物産에 위임했으나 내장원이 독자적 판매 가능 조항 계약서에 명기	

### IV. 일제강점기 홍삼 전매제도 운용과 경작 지원 시스템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위해 강압적으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은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무능력한 대한제국 정권 때문에 1904년 한일의정서를 통해 국내에 일본군 주둔이 허용되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획책하여 1905년 을사늑약을 무력으로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적인 위상을 빼앗았다. 이후 1910년 국권침탈로 대한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국권침탈 이전부터 조선과 대한제국을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한제국 황실의 홍삼 전매제도를 이어받아 허수아비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1908년에 홍삼전매법을 공포하도록 하였다[표 4]. 당시 홍삼전매법은 배상금 선교제도의 대출 이자를 연 7~8%의 고리로 융자하였고 그 전보다 계약면적이 축소된 특별경작구역을 지정하여 홍삼 경작인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그리고 홍삼전매법의 특별경작구역 지정[그림 5, 표. 8]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당시 홍삼 사업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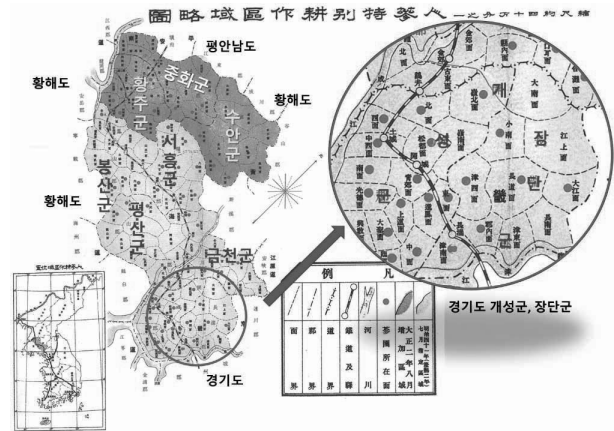


그림 5. 홍삼전매법 실시에 의한 특별 경작구역(황색 지역; 1908년, 적색 지역; 1912년도)<sup>25)</sup>  
 1908년도 특별경작구역 : 경기도(개성군, 장단군), 황해도(봉산군, 서흥군, 평산군, 금천군)  
 1912년도 특별경작구역 추가구역 : 1908년도 구역에 황해도(황주군, 수안군), 평안남도(중화군)를 추가지정

개성의 경작인들은 과거보다 축소된 계약면적을 할당 받은 것은 물론 홍삼포지 운영이 완전히 좌절된 경우도 있었는데 후에 홍삼 대체상품으로 백삼의 제품력과 디자인을 특화하고 최초로 ‘고려인삼’ 상표로 수출함으로써 개성 인삼 농가의 명맥을 유지했다.<sup>26)</sup> 1908년 홍삼전매법 공포 시 특별경작구역은 경기도 개성시, 장단군, 풍덕군, 황해도의 봉산군, 서흥군, 평산군, 금천군을 지정하였다. 이후 1912년도 8월에 황해도의 황주군, 수안군, 평안남도의 중화군이 특별경작구역으로 추가 지정

<sup>24)</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1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177.

<sup>25)</sup> 조선총독부, 『홍삼전매법 실시 이후 삼정 시설요령』(1915).  
<sup>26)</sup> 최문진 편, 『개성인삼개척소사』 (경성 조선산업연구회, 1941).

표 8. 대한제국 및 일본강점기 홍삼전매법의 특별경작구역 변경(1908, 1913년 일제 말기)

구역 구분		삼포 소재면			해당 면 개수 (누적수)
도	군	최초 지정구역(1908년) <sup>a)</sup>	증가구역 (1912년) <sup>b)</sup>	구역 변경(일제말기) <sup>c)</sup>	
경기도	개성군 (개성부)	서면, 북면, 영북면, 중서면, 송도면, 남면, 청교면, 상도면, 진봉면, 동면	좌동	좌동	14
	풍덕군 <sup>d)</sup>	광덕면, 대성면, 중면, 임한면			
	개풍군	-	-	신설 지정	
	장단군	대남면, 소남면, 진서면, 장도면, 대강면, 군내면, 진남면, 강상면, 장남면, 진동면	좌동	좌동	10
	파주군	-	-	신설 지정	
	연천군	-	-	신설 지정	
황해도	봉산군	사인면, 기천면, 덕재면, 쌍산면	좌동	좌동	4
	서흥군	세평면, 소사면, 도면, 목감면, 울리면, 구포면, 내덕면, 중부면, 용평면, 동부면, 매양면	좌동	좌동	11
	평산군	상월면, 문무면, 인산면, 안성면, 보산면	좌동	좌동	5
	금천군	현내면,	현내면, 서천면, 구이면, 합탄면	좌동	4
	토산군 <sup>e)</sup>	서천면, 구이면, 합탄면			
	황주군*	-	흑교면, 청룡면, 주남면 인교면, 구락면	제외됨	5
	수안군*	-	육계면, 대오면, 성동면, 대평면	제외됨	4
	평안남도	중화군*	-	상도면, 간동면, 배화면 천곡면, 상원면	제외됨
계		2개 도내 8개 군의 48개 면	3개도, 11개 군 62개 면	2개 도로 축소	62

<sup>a)</sup> 홍삼전매법[대한제국 법률 제14호, 1908년(융희 2년) 7월 20일]에 의한 특별경작구역 지정은 탁지부령 제22호(융희 2년 7월 25일) 및 제34호(융희 2년, 9월 21일)로 공포됨.

<sup>b)</sup> 조선총독부, 「홍삼 전매법 실시 이후 삼정 시설요령」, 1915.

<sup>c)</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3장 인삼경작」,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431.

<sup>d)</sup> 풍덕군은 1914년도에 개성군에 편입됨.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풍덕군> (검색일 2022년 9월 2).

<sup>e)</sup> 토산군은 1914년도에 금천군에 편입 후 1952년도에 금천군의 외류면, 합탄면, 좌면, 서천면, 구이면과 토산면의 10개 리를 합병해 토산군(토산읍, 18개 리)을 신설함.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토산군> (검색일 2022년 9월 2일).

\* 1912년도 신규 지정된 군

되었다[그림 5와 6, 표 8].<sup>27)</sup> 그러나 일제 말기에 개성의 삼정과[그림 7]와 지리적으로 원거리이고 병충해 만연 구역이었던 황해도의 황주군, 수안군, 평안남도의 중화

군이 특별경작구역에서 제외되고 경기도의 개풍군, 파주군, 연천군이 신규로 추가 지정되었다.<sup>28)</sup>

<sup>27)</sup> 조선총독부, 「홍삼 전매법 실시 이후 삼정 시설요령」 (1915).

<sup>28)</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1장 구한국시대의 홍삼 전매」, 「한국전매사」 제2권 (삼성인쇄주식회사, 1981) p.409-419.



그림 6. 대한제국 융희 2년 관보에 공포된 홍삼전매법(1908년 7월, 법률 제14호)의 특별경작구역 - 상기 전매법 중제5조 정부는 홍삼 제조의 원료에 충당할 인삼의 특별경작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에 의한 특별경작구역 지정에 관한 당시 관보(관보 융희 2년)  
 (가) 탁지부령 제22호(융희 2년 7월 25일)에 의한 인삼의 특별경작구역 지정 - 경기도 개성군, 장단군, 풍덕군, 황해도 금천군 토산군, 평산군, 서흥군  
 (나) 탁지부령 제34호(융희 2년 9월 21일)에 의한 인삼의 특별경작구역 지정 - 탁지부령 제22호에 황해도 봉산군을 추가지정



그림 7. 조선총독부 삼정과 (1915년 당시 개성 소재)<sup>29)</sup>

개성 소재 조선총독부 삼정과[그림 7]의 관리에 따라 특별 경작구역에서 생산된 수삼은 일단 개성의 홍삼 제조소 내 수삼 수납장에 집결되었다. 집결된 수삼은 바로 선별 후 홍삼 제조용 수삼에서 제외된 것은 후삼(後蔘)이라 하여 해당 경작인에게 그 자리에서 반납되었다. 제조용으로 반입된 수삼은 세삼장(洗蔘場)에서 세척하여 증장소(蒸場所)에서 증삼(蒸蔘)한 후 일건장(日乾場)에서 건조하였다. 1908년 개성의 삼정과 홍삼제조소의 전경과 각 처리시설 위치를 [그림 8]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8. 1908년 개성 삼정과 홍삼 제조소의 전경 및 평면도<sup>30)</sup>  
 A: 개성 삼정과 홍삼 제조소의 전경, B: 삼정과 부속 제조장 견취도(見取圖), C: 제조소 내 증장(蒸場)  
 ① 수삼 수납장, ② 후삼(後蔘) 수납장, ③ 세삼장(洗蔘場), ④ 증장소(蒸場所), ⑤ 일건장(日乾場), ⑥ 창고, ⑦ 화고(火庫), ⑧ 사무실, ⑨ 직공 식당, ⑩ 직공 기숙소

일제강점기 기간 수삼의 수매대금과 가공 후 홍삼 가격 그리고 중국에 수출되어 현지에서 판매된 가격을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았다[표 9]. 1920년대 홍삼 원료삼으로 특별경작구역에서 수확된 6년생은 1,000칸(3,240 m<sup>2</sup>) 면적에서 평균적으로 수납금이 당시 5,000원이었다고 한다. 이 가격은 당시 쌀 1,000가마에 해당하는 액수

<sup>29)</sup> 조선총독부, 『홍삼 전매법 실시 이후 삼정시설요령』(1915).

<sup>30)</sup>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편, 『한국삼정요람』(1908)

표 9. 홍삼 원료삼(수삼)의 수매대금 및 홍삼 가공 후 가격(1,000칸당 추정액, 1914~1915년대)

시대 구분	수삼 생산량 및 대금 / 1,000칸		수삼의 홍삼 제조량 및 대금 / 1,000칸		
	평균 생산량 <sup>a)</sup> (근)	수매대금 <sup>b)</sup>	중량(추정) (근)	국내 가격 <sup>d)</sup>	해외(중국) <sup>d)</sup> 가격
19014~1915년대 일제강점기	1,260	5,000원	371	16,695원	55,650원
현재 가격 환산 <sup>c)</sup>	-	1.89억원 <sup>c)</sup>	-	6.32억원	21.06억원

<sup>a)</sup> 양정필, 「1910-20년대 개성상인의 백삼 상품화와 판매 확대 활동」, 『의사학』 20 (대한의사학회, 2011) p.83-118. 이 연구보고에 의하면 당시 평균 단위생산량은 1,260근(0.756kg)/칸(3.24m<sup>2</sup>)으로 1,000칸은 1,260근(756kg)이 생산됨.

<sup>b)</sup> 오성, 「한국문화사, 인삼의 경작과 홍삼 가공업」,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07).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16\\_0050\\_0010\\_0040\\_001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16_0050_0010_0040_0010) (검색일 2021년 9월 2일).

이 내용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6년생 1,000칸에서 수삼 수확 시 평균 수매대금은 5,000원임.

<sup>c)</sup> 양정필, 「1910-20년대 개성상인의 백삼 상품화와 판매 확대 활동」, 『의사학』 20 (대한의사학회, 2011) p.83-118.

이 연구보고에 의하면 당시 쌀 한 가마는 5원으로 현재 80kg 쌀 한 가마 189,260원(at센터 농산물 도매가격 전국 주요 시장 2022년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일제강점기 1920년도 1원 가격은 현재 시가 37,852원임.

<sup>d)</sup> 중앙일보, 「(1066) 제37화 고려인삼(5)/임현영」 (1974, 6.21) [www.joongang.co.kr/article/print/1379310](http://www.joongang.co.kr/article/print/1379310) (검색일 2022년 9월 1일).

이 기사에 의하면 1909년경 홍삼 1근당 가격은 당시 국내에서 최소 45원, 청나라에서는 최소 150원이었음.

였다.<sup>31)</sup> 당시 쌀 1,000 가마의 지금 값어치는 현재 쌀 1가마 도매가격이 189,260원이므로 현 시가로 약 1억8천9백만 원으로 큰돈이었다[표 9]. 당시 삼포 경작 비용이 생산가의 50% 정도라고 했을 때 1,000칸의 홍삼 원료 삼포에서 삼포주는 현 시가로 9천4백오십만 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32)</sup> [표 9]와 같이 1,000칸에서 1,260근(756kg)의 수분함량 75%의 수삼을 생산하고 증삼하여 건조하면 수분함량 15%의 홍삼 약 371근(222kg)이 제조된다. 이렇게 생산된 당시 홍삼은 청나라로 수출할 때 국내 가격의 3.3배 정도 높게 판매되어<sup>33)</sup> 당시 인삼포지 1,000칸

(3,240m<sup>2</sup>)에서 생산된 수삼을 홍삼으로 제조하여 중국에서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금액은 현 시가로 환산 시 21억6백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었다[표 9].

1908년 홍삼전매법 공포 이후 병충해가 만연하고 경작자들은 자금난으로 인삼 사업이 날로 쇠퇴해져 갔다. 이에 정부는 인삼 사업의 부흥을 위해 인삼경작자들이 일치단결할 수 있는 협동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성삼업조합을 1910년(隆熙 4년) 설립하게 되었다. 삼업조합의 주요 업무는 경작 비용 대부, 건전 묘삼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묘포 운영, 홍삼 제조 증조소 시설을 활용하여 백삼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종자와 자재 공동구입, 그리고 인삼의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sup>34)</sup> 이처럼 조합이 다양한 사항을 경작자인 조합원에게 지원한 것은 당시 일제강점기하에서 홍삼으로부터 얻는 막대한 이익을 계속 유지하고 증가시키려는 일본의 단기적인 방침일 뿐 인삼의 품종개발과 홍삼의 효능 구명이라든가 하는 중장기적 발전대책을 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sup>31)</sup> 오성, 「한국문화사, 인삼의 경작과 홍삼 가공업」,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07)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16\\_0050\\_0010\\_0040\\_001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16_0050_0010_0040_0010) (검색일 2021년 9월 2일).

<sup>32)</sup> 오성, 「한국문화사, 인삼의 경작과 홍삼 가공업」,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 2007).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16\\_0050\\_0010\\_0040\\_0010](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16_0050_0010_0040_0010) (검색일 2021년 9월 2일).

<sup>33)</sup> 중앙일보, 「(1066) 제37화 고려인삼(5)/임현영」 (1974, 6.21) [www.joongang.co.kr/article/print/1379310](http://www.joongang.co.kr/article/print/1379310) (검색일 2022년 9월 1일).

<sup>34)</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5장 삼업조합」, 『한국전매사』 제2권 (삼성인쇄, 1981) p.463-464.

표 10. 개성삼업조합\*의 당시 주요 업무 및 수행사항(1910~1914년)<sup>35)</sup>

주요 업무	수행사항
삼업자본의 융통	- 대부기관 : 1910년부터는 한호농공은행**, 1931년부터는 삼정(三井)물산 이율 : 6分 5厘 용자
묘삼 포지의 운영	인삼 병해 예방에 건전 무병 묘삼 육성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 운영 시작(1913년 11,556칸) → 기후 불순으로 생산성 저하 → 임시 총회 조합직영 폐지 건의(1913년 8월) → 폐지가결(1914년 2월)
백삼 공동제조장 경영	홍삼 제조장 시설로 백삼 제조, 경비는 백삼 제조자 부담
종자와 자재의 공동구입	- 종자, 퇴비, 기타 필요 자재 물품 공동구입을 추진했으나 → 실제로는 일복용 철선, 울타리용 싸리 종자, 야간경 비용 외투 분배한 정도
인삼의 홍보 (선전)	개성산 백삼을 아래 각 박람회 출품하여 홍보 ○ 1912년 일본 동경 拓殖박람회 → 개성산 백삼 출품, 인삼 재배 기원 전설을 표시하는 인형을 진열 ○ 1913년 일본 대판 박람회 → 인삼 해설서를 인쇄하여 배포 ○ 1914년 일본 동경 박람회 → 1~6년근 실제 심은 소형 인삼포 소개, 백삼 표본 진열, 인삼 책자 인쇄하여 배포 ▷ 매년 일본의 박람회에 출품으로 인삼선전 효과가 나타나 일본 내 판매량이 증가함.

\* 개성삼업조합 사무실은 전매국 개성출장소 청사 내에 둠

\*\* 한호농공은행은 이후 조선척산은행에 합병, 1914년 이후 삼정(三井, 미쓰이)물산이 대부 기관이 됨

개성삼업조합은 [표 10]과 같이 1910년 3월부터 춘계 신설 삼포 면적에 따라 경작자금을 한호농공은행이 조합원에게 저리로 용자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리고 품질이 우수한 수삼 생산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체형이 우수한 묘삼 이식이 중요하여 묘포를 1913년에 직영으로 약 1만 칸의 대면적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후 불순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자 도중에 폐지하게 되었다. 재배 기술을 연구하여 생산성이 향상된 묘삼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었으나 당시 기상요인을 극복하여 직영 묘포 운영을 재시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백삼 제조를 위한 홍삼 제조시설 활용, 백삼제품의 선전 등 홍삼 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표 10]. 당시 전매품인 홍삼에 대해 삼업조합의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 일제강점기 전에 홍삼 포지를 운영하였던 경작인들이 차선책으로 운영하는 백삼 포지를 지원해주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백삼 포지 지원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계속 전국에 인삼재배 저변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홍삼전매령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이루어

진 조선 황실의 전매제와 그 뒤에 해방 후 우리나라 전매법의 특이사항을 살펴보았다[표 11]. 조선은 1797년 중국 사행 경비 충당목적으로 역관 1인당 홍삼 3근을 제공하는 포삼제를 실시하였다.<sup>36)</sup> 이후 50년이 지나서 청나라에 홍삼 수출량이 4만 근으로 증가하자 1895년에는 실질적인 홍삼 전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포삼규칙이 조선의 법률 제14호로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에서 1899~1904년간 수행된 배상금 선교제도의 대부이자자는 100원에 대해 하루 이자(日步)<sup>37)</sup> 4전(錢)의 저리로 용자<sup>38)</sup> 되었으나, 일본의 위압이 거세었던 1908년에는 배상금 선교제도의 대부이자자가 연 7~8%의 고리로 용자되었다.<sup>39)</sup>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1876년부터 조선의 개항, 국내 일본군 주둔, 외교권 박탈

<sup>36)</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 123-177.

<sup>37)</sup> 일보(日步)란 원금 100원에 대한 하루의 이자를 말한다. 1910년 한성부 토지 가옥 전당 증명의 예를 보면 하루에 6전 5리 정도를 지불하였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자'), 조선 시대, 1원=100전=1,000리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폐단위).

<sup>38)</sup> 양정필, 「한말 개성상인의 삼업경영과 그 성격」, 『사학연구』 94(한국사학회, 2009) p. 123-176.

<sup>39)</sup> 양정필, 「1910-20년대 개성상인의 백삼 상품화와 판매 확대 활동」, 『의사학』 20(대한의사학회, 2011) p. 83-118.

<sup>35)</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5장 삼업조합」,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 463-464.

표 11. 홍삼의 국가관리 초기 원시적인 제도와 이후 발전한 전매법의 특이점

홍삼 전매 관련 제도 규칙, 법률(연도)	각 관련 법령별 특이사항
포삼제 <sup>a)</sup> (1797년, 정조 21년)	관리를 정부가 통제, 사역원에서 관리 역관 중국 사행시 경비 총당, 역관 1인당 홍삼 3근 제공
포삼규칙 <sup>a,b,c)</sup> (1895년 9월)	탁지부에서 통합관리, 홍삼증조규례 제정(농상공부령 7호), 홍삼 근당 10원 세금징수 포삼공사 설치, 공사의 허가증이 있어야 인삼 재배, 수삼매입, 홍삼 제조가 가능함 ⇨ 홍삼 전매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임
홍삼 전매제 시행 <sup>d)</sup> (1899년 11월)	내장원에서 통합관리, 배상금 선교제도 시행(1899~1904년) 대한제국은 조선의 포삼제, 포삼규칙 등을 이어받아 시행
홍삼전매법 공포 <sup>d,e)</sup> (융희 2년, 1908년 7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14호로 통감부에서 통합관리 홍삼의 제조는 정부 전속(專屬)임. 배상금 선교제도 계속 시행 - 특별경작구역을 지정, 홍삼 원료 수삼은 면허받은 자만이 경작함 - 삼포 위치, 재배면적에 대해 매년 허가를 받도록 함
홍삼전매령 공포 <sup>f)</sup> (1920년 11월 15일)	조선총독부제령 제24호로 홍삼과 인삼 종자는 정부 허가 없이 수입 불가 수삼 및 인삼 종자는 정부의 허가받은 자 외에 수출 불가 피부백삼, 수삼, 인삼 종자 모두 정부 허가 없이 수출 불가(1922년 개정)
홍삼 전매법 공포 <sup>g)</sup> (1956년 1월 20일)	대한민국 재무부에서 관리 인삼, 수삼, 홍삼, 백삼, 피부 백삼의 용어 정의가 신규로 포함

<sup>a)</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177.

<sup>b)</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6장 조선조 말기의 제 시책」, 『한국전매사 제1권』(고려서적, 1980) p.325-330.

<sup>c)</sup> 대한제국 관보(1895년), 조선시대 법률 제14호.

<sup>d)</sup>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업 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의사학』 18(대한의사학회, 2009) p.133-155.

<sup>e)</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1장 구한국시대의 홍삼 전매」,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409-419.

<sup>f)</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2장 합방 후의 홍삼 전매제도」,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423-427.

<sup>g)</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14장 홍삼전매법과 동시행령의 제정」,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525-531.  
이후 홍삼전매법은 1972, 1975, 1977, 1982년에 홍삼 제품 제조 허가 관련 등으로 일부가 개정됨.

을 통해 국권 피탈 이전부터 대한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일본의 위압이 거세었던 1908년에는 홍삼 관리가 내장원 삼정과에서 통감부로 옮겨져 내장원의 주요 재정 재원을 일본이 침탈하게 되었다. 당시 홍삼전매법은 일본이 홍삼 분야를 장악하기 위해 특별경작구역을 지정하여 홍삼 원료 수삼은 면허받은 자만이 경작하고 삼포 위치, 재배면적에 대해 매년 허가를 받도록 공포하였다. 그리고 홍삼 제조는 정부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20년 일제강점기의 홍삼전매령은 이전의 홍삼전매법 내용에 과거 1897년 중국과 일본의 저가 불량 종자를 수입하여 재배할 때 병 피해가 만연하여 재배가 어려워진 사실 때문에 인삼 종자 수출입은 정부의 허

가 없이는 절대 불허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리하여 일본은 1908년부터 홍삼 전매를 통해 세금 및 판매이익과 대부이자를 거두어들여 막대한 우리나라 국가수익을 침탈하였다. 1908년 대한제국 정부 총 세입예산은 13,410,347원이었는데 이 중 홍삼 전매수입은 665,115원이었다고 한다.<sup>40)</sup> 당시 홍삼 전매수입은 전체 정부 세입의 약 5%에 해당하며 [표 9]와 같이 당시 1원의 현재 시세는 37,852원임으로 1908년 홍삼 전매수입은 현재 시세로 약 252억 원으로 추산된다.

<sup>40)</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1장 구한국시대의 홍삼 전매」,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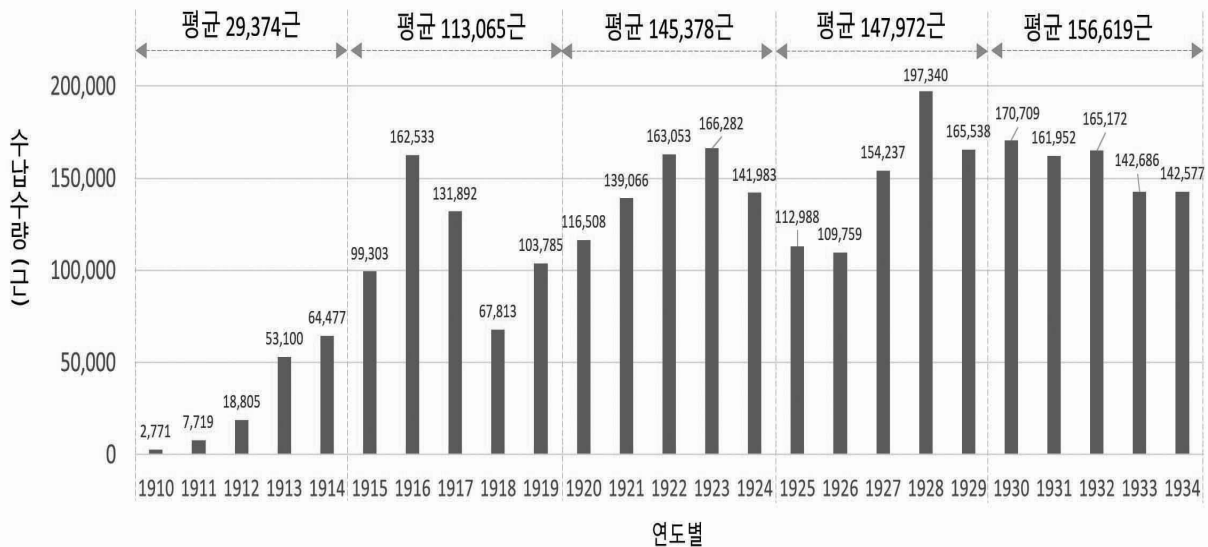


그림 9. 1910년~1934년 일제강점기의 연도별 개성지역의 홍삼 원료삼(수삼) 수삼 수량(근)<sup>42)</sup>

인천이 개항된 1883년부터 1899년까지 계속 일본 상인의 홍삼 밀조와 대한제국 정부의 홍삼세 징수 등에 의한 개성의 인삼 사업 수익 약화는 개성상인이 투자를 중지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당시 이러한 위축된 개성의 홍삼 원료삼 재매는 上田 등<sup>41)</sup>이 세균성 병해로 보고한 적부병(赤腐病) 발생으로 인해 더욱 타격을 받아 1906년~1910년의 인삼경작은 폐농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1910년도 수삼 생산량은 불과 2,771근(1.6톤)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908년 홍삼 전매제가 공포되고 확립되면서 점차 생산량은 증가하여 1915~1919년 연평균 113,065근의 수삼이 생산되어 홍삼 약 2만3천 근이 생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1934년까지 연평균 약 15만 근의 수삼이 생산[그림 9]되어 약 3만8천 근의 홍삼이 평균적으로 매년 제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중 1915년 이후 이러한 홍삼 제조량 증가는 전매제도에 의한 안정된 삼업육성 정책의 결과로서 1908년부터 수삼 배상가격 사전 공시<sup>43)</sup>, 1909년 모범경작자 포상 및 삼포 자금 융자의 결과이었다.<sup>44)</sup> 1908년도부터 수삼 전에 사전 제시된 수삼 배상가격은 인삼경작에 필요한 제경비, 금리 등을 조사하고 물가 등을 참작하여 수삼의 등급과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어 매년 공시하였다[표 12].<sup>45)</sup> 이러한 가격 공시는 인삼경작자가 안심하고 경작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삼업이 부흥하게 되는 효과를 낳은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이 추진된 당시 삼업육성 정책은 삼포 경영규모의 확대로 이루어졌으나 일제의 궁극적 목표는 한인 삼포주의 육성이 아니라 홍삼 사업의 이익금으로 식민지 경영비용을 충당하려는데 있었다.

대한제국 시절인 1899년부터 내장원에서 시작된 홍삼

<sup>41)</sup> 上田榮次郎. 「本邦及韓國に於ける 赤腐病の研究成績」, 『農試報告』35 (1909) p.61-104.

<sup>42)</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3장 인삼경작」,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433.

<sup>43)</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446-448.

<sup>44)</sup> 양정필. 「19세기~20세기 초 개성상인의 삼업자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sup>45)</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448.



표 12. 일제강점기 삼포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한 삼업 육성정책<sup>47)</sup>

연도	추진사항	수행사항
1908	수삼 배상가격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 등급에 따른 배상가격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상가격 검토요인: 경작, 관리, 수확, 납부 등에 필요한 제 경비, 금리조사</li> <li>- 차등화 목적: 품질 및 편급 구분으로 우량품 산출 장려</li> <li>- 등급: 우등, 상등, 보통의 3급 구분하여 가격 차등 결정</li> <li>- 공시 시기: 1908년도 9월 12일 (수납 직전)</li> </ul> </li> <li>□ 삼포주 요구사항은 협의하되 전매국 제시사항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포주(경작인) 요구사항: 배상가격 인상 요구(1909년)</li> <li>- 요구사항: 적부병으로 생산량 감소하여 배상가격 인상을 요구함</li> <li>- 전매국 측 아래 사항전달, 협의 후 요청보류, 인상 없이 수매</li> </ul> </li> </ul> <p>[전달내용] 전매국은 생산성 증진을 위해 현재 병해충 예방법 강구가 급선무이고 이외 삼포 도난, 紅蔘 密造의 단속 등을 엄밀히 관리하기 위해 거금 투자로 사업 추진하겠음을 고지</p>
1909	모범경작자 포상	□ 1909~1910년은 묘포 경작인 대상, 1911년은 본포 경작인에 한함
1910	개성삼업조합* 결성	□ 1910년 조합결성으로 조합원(경작인) 이익 추구
	삼업자금 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호농공은행**은 경작자금을 저리로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계 신설 삼포면적 크기에 따라 경작인은 개성 삼업조합을 통해 자금을 융통</li> </ul> </li> </ul>

\* 개성삼업조합 사무실은 전매국 개성출장소 청사 내에 둠.

\*\* 한호농공은행은 이후 조선척산은행에 합병, 1914년 이후 미쓰이(三井)물산이 대부 기관이 됨.

원료삼 포지의 재배 비용 지원제도인 배상금 선교제도는 이후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명칭이 전도금(前渡金)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지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전도금은 최종 6년생 예상 구매 가격의 60%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비용 지급은 묘삼을 이식한 2년생에서 계약금으로 20% 이내, 이후 6년생 봄에 예상 구매가격에서 나머지 40% 범위에서 중도금으로 나누어 선지급하고 있다. 홍삼 원료삼인 6년근 수삼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근대의 과학적 연구는 일제강점기 1937년 전매국 연구소에서 시작되었으며 해방 이후 1945년 전매국 전매연구소로 이어져 왔다<sup>46)</sup>.

## V. 맺음말

19세기 개성의 홍삼 사업은 상인과 경작인의 협력에 의한 현지 재배 실용화와 함께 민간주도형 대부 제도였던 시변제의 재배 비용 지원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중반에 홍삼 수요가 중국 청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개성의 홍삼 제조는 대규모 포지에서 생산된 수삼을 원료로 최대 4만 근까지 가공되어 수출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주권이 상실되면서 인삼 포지를 침탈하기 시작한 일본 상인들이 강압적으로 수삼을 헐값에 구매하여 홍삼을 불법 제조하고 밀수출하여 개성의 인삼경작이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성상인이 시변제의 대부 등 인삼 투자를 중지하자 개성 경작인들은 인삼 재배 포기를 선언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대한제국은 황실 재정에 크게 기여한 홍삼 사업이 기로에 놓이자 삼포 경

<sup>46)</sup>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연구원 소개, <https://www.kgc.co.kr/rnd/rnd-introduction/research-institute.do> (검색일: 2022년 9월 3일).

<sup>47)</sup> 양정필, 『19세기~20세기 초 개성상인의 삼업자본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5장 삼업조합』, 『한국전매사 제2권』(삼성인쇄, 1981) p.463-464.

<sup>48)</sup>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p.123-177.

[부표]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홍삼 관련 제도 및 법령 연대표(1797~1920)<sup>48)</sup>

국호	시대구분		관련 제도	주요 내용 및 관리기관	세부 사항
	연도	왕조			
조선	1797	정조 21년	포삼제 시작	- 역관의 중국 사행 경비 지원 - 관리기관 : 사역원	□ 역관 1인당 2~3근의 홍삼 휴대하여 사행하도록 한 제도(연간 120근 한정) - 포삼 1근의 가격은 은 100냥
	1802	순조 2년	홍삼세 시작	- 홍삼에 세금부과	□ 포삼제 운영을 세금징수로 변경 - 홍삼세 근당 200냥 세금징수, 세금 수입의 50%는 사행원에게, 나머지 50%는 통역 담당 역관에게 지급, 연간 허용 포삼은 120근 한정
	1811	순조 11년	포삼량 증가	- 밀조 홍삼(潛蔘) 금지방안	□ 연간 허용된 홍삼 포삼은 200근 한정 - 홍삼세 24,000냥 징수(근당 200냥 세금) <sup>a)</sup>
	1822~1894	순조 22년 ~ 고종 31년	포삼량 및 홍삼세 변동	1884년 왕실이 홍삼 제조권 장악(1894년 갑오개혁으로 사역원 폐지)	□ 연도별 경시적인 홍삼 제조량 [근(연도)] - 2백(1822년) → 8천(1834년) → 4만(1847년) → 15천(1864년) → 15천(1866) → 202백(1875) → 252백(1881) → 202백(1884) → 15천(1894) □ 1864년부터 홍삼세는 斤당 14냥 □ 1887년 왕실 무기 구매용 홍삼 1천 근 수출
	1895(9월)	고종 32년	포삼 규칙 <sup>b)</sup> (법률 제14호)	- 홍삼 전매제도의 효시 - 紅蔘蒸造規例 제정 - 관리기관 : 탁지부(재배분야는 농상공부에서 관리)	□ 홍삼 판매가의 40% 세금부과로 인삼 재배가 위축되고, 인삼 종자값 상승으로 인삼경작 포기 농가 출현 ⇒ 包蔘公司 설치 후 包蔘公司章程 제정 □ 홍삼세 斤당 10원(50냥) 징수 □ 紅蔘蒸造規例 제정(농상공부령 7호) □ 戶曹 수행업무를 度支部에서 통합관리
대한제국	1899(11월)	光武 3년 (고종 36년)	홍삼 전매제	- 관리기관 : 내장원	□ 대한제국 황실 전매제를 이어받아 내장원이 관리
	1899(12월)		삼정사 장정 (蔘政社章程)	- 홍삼 관련 삼정 업무규정 - 관리기관 : 내장원 삼정과	□ 궁내부 내장원 산하에 삼정과 신설, 운영 - 삼정과는 고종의 직속 기관으로 삼포 경영, 농업관리, 삼포 도굴(盜掘) 방지, 홍삼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였고 인삼세 징수와 매매이익을 확보하는 부서 ⇒ 삼정사 회사설립 및 운영, 삼정사장정(사규) - 내장원경 이용익은 삼포 경작인 대상 배상금 선고제도 시행(월 4전의 저리 융자)
	1908(7월)	隆熙 2년 (순종 2년)	홍삼 전매법 공포 (법률 제14호)	- 배상금 선고 제도 계속 시행 - 관리기관 : 경리원(1905년 내장원은 경리원으로 명칭 변경)	□ 일제는 홍삼을 국가전매사업으로 확정하고 1899년 대한제국 황실의 홍삼 전매제를 이어받아 전매법을 공포 - 계약 포지 생산 수삼 수매하는 특별 경작구역 공포 - 이식로지 경작자금 저리 융자로 재배면적 증가 → 한호농공은행에서 조합 통해 융자 <sup>c)</sup> - 배상금 선고제는 이자율 7~8% 고리 융자 - 개성에 삼정과 부속 홍삼제조소 운영
일제	1920	-	홍삼전매령 공포 (조선총독부 제령 제24호)	- 인삼 증자는 정부 허가 없이 수입 불가 - 관리기관 : 조선총독부, 전매국	□ 인삼 재배, 제조관리에 근대 경영기법 도입 시도 - 경작 방법 개량을 위한 연구조사, 시험포 운영 <sup>d)</sup> , ⇒ 무병 건전 묘삼 식재, 병충해 예방, 방제 연구 - 특별경작구역 내 준수 절차 등 경작지시사항 전달 <sup>d)</sup> - 경작장려규례 제정(1925년)하여 병충해 예방/구제 공로자 장려금 교부 <sup>d)</sup> - 삼업자금 융자로 삼포 경영 규모 확대 <sup>d)</sup> - 수삼 배상가격을 품질별 차등화하여 수납 <sup>d)</sup>

<sup>a)</sup> 이철성, 「조선후기 고려홍삼 무역량의 변동과 의미」, 『인삼문화』 1 (고려인삼학회, 2019) p.67-77.

<sup>b)</sup> 대한제국 관보 개국 504년 9월 6일 (내각기록국 관보과, 1895).

<sup>c)</sup> 전매청 공보담당관실, 「제3편 인삼, 제3장 인삼경작」, 『한국전매사 제2권』 (삼성인쇄(주), 1981) p.431-49.

<sup>d)</sup> 양정필, 「19세기~20세기초 개성상인의 삼업자본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비와 국가 주도형 대부 제도인 배상금선교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개성의 홍삼 원료 재배는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1897년에는 국외 저질 인삼 종자가 수입되어 뿌리썩음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인삼의 적부병이 만연하여 1906년 홍삼 원료 수삼 포지는 거의 폐농수준이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일제강점 초기 폐농수준의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생산성이 향상된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홍삼 원료 수삼의 생산량 증가는 1908년부터 전매제도 아래에서 수삼 배상가격 사전 공시, 신규면적 재배 비용 용자, 우수경작인 장려금 지급 등 삼엽 육성정책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제의 궁극적 목표는 한인 삼포주의 육성이 아니라 홍삼 사업의 이익금으로 식민지 경영유지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개성 계약경작인의 수삼재배 수납금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개성 경작인들은 자체 자본과 노력으로 수량 증산을 이끌었고 홍삼 외 비전매 백삼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10년 이후 일제는 원료 수삼 생산성 향상에 의한 홍삼 수출로 막대한 판매이익을 거두었으나 우량품종 개발과 홍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지원이 미흡하여 19세기 중반보다 월등한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인삼 재배는 환경변화에 따른 재배기술 개선과 향상을 위한 연구를 선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홍삼 원료 수삼 재배와 효능 등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향후 홍삼 사업이 제2, 제3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이해 상충

저자는 이해 상충이 없음을 선언함.

## Acknowledgement

이 연구는 2021년도 (사)고려인삼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참고문헌

### 사료

- 조선총독부. 『홍삼 전매법 실시 이후 삼정시설 요령』 (1915).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편. 『한국삼정요람』 (1908).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제1회 삼정보고』 (1908).  
 『승정원일기 제289책』 15책 442쪽 (숙종8년 4월 13일).  
 대한제국 관보 개국 504년 9월 6일 (내각기록국관보과, 1895).

### 단행본

-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과 인삼업』 (푸른역사, 2022).  
 양정필. 『19세기~20세기 초 개성상인의 삼엽자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전매청. 『한국전매사 제1권』 (고려서적주식회사, 1980).  
 전매청. 『한국전매사 제2권』 (삼성인쇄주식회사, 1981).  
 최문진 편. 『개성인삼개척소사』 (경성 조선산업연구회, 1941).

### 논문

- 구도영. 「근세 동아시아 세계 약용식물 인삼의 가공과 유통 - 조선의 대명 진헌 인삼을 중심으로」, 『의사학』 29(3) (대한의사학회, 2020).  
 박현규. 「동의보감의 중국 전래 시기와 동의보감 활용에 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44 (2014).  
 박현규. 「일본에서의 조선 허준 동의보감 유통과 간행」, 『일본연구』 29 (2018).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인삼 관리와 삼세 징수」, 『규장각』 1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6).  
 양정필. 「근현대 개성상인의 경제조직 시론」, 『역사문제연구』 20 (역사문제연구소, 2008).  
 양정필. 「대한제국기 개성지역 삼엽 변동과 삼포민의 대응」, 『의사학』 18 (대한의사학회, 2009).  
 양정필. 「한말 개성상인의 삼엽 경영과 그 성격」, 『사학연구』 94 (한국사학회, 2009).  
 양정필. 「1910-20년대 개성 상인의 백삼 상품화와 판매 활

동], 『의사학』20 (대한의사학회, 2011).  
오성. 「한국문화사, 인삼의 경작과 홍삼 가공업」, 『우리역사넷』(국사편찬위원회, 2007).  
이철성. 「조선후기 고려홍삼 무역량의 변동과 의미」, 『인삼문화』1 (고려인삼학회, 2019).  
上田榮次郎. 「本邦及韓國に於ける 赤腐病の研究成績」, 『農試報告』35 (1909).

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연구원 소개, <https://www.kgc.co.kr/rnd/rnd-introduction/research-institute.do>  
위키백과, 이용익. <https://ko.wikipedia.org/wiki/이용익>  
(2022년 9월 3일 열람).  
중앙일보, 「(1066)제37화 고려인삼(5)/임현영」(1974, 6.21)  
[www.joongang.co.kr/article/print/1379310](http://www.joongang.co.kr/article/print/1379310)  
황성신문 1899년 8월 29일자.

### 기타 인터넷 및 신문기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정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6798>, (2022년 9월 3일 열람).

Received: December 24, 2022

Revised: January 13, 2023

Accepted: January 15, 2023